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3. 5. 2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. 4. 23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3. 4. 27.

다. 상정일자 : 제17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3. 5. 2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이 준 범 복지행정과장

가. 제안이유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서 규정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우리 구 자활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기금운용관의 직위를 조정하고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법률용어의 순화를 반영하여 조문상의 일부 표현을 변경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1)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(안 제4조의2 신설)

- 2) 위원의 이해충돌가능성 방지 규정 마련(안 제5소제4항 신설)
 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규정에 위원의 제척, 기피, 회피 규정 신설
- 3) 기금운용관의 직위 하향 조정(안 제12조제2항)
 - 「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라 기금운용관의 직위를 주민생활국장에서 복지행정과장으로 조정
- 4) 자활기금의 용어 정비(안 전반)
 - 보건복지부 「자활기금 활성화 추진계획」에 따른 기금 조성 각 호 용어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(자활공동체->자활기업) 정비
- 5)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전반)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, 「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따라 기금운용관의 직위를 조정하며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8조의 개정예 의거 자활공동체 명칭을 자활기업으로 변경하고,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